

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933호, **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*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*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요내용

가.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「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」 여유재원 172억 14백만원을 전입받아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

※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2.7% 변경

나. 운용규모 : 932억 7백만원 (당초계획 대비 172억 14백만원 증가)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수입계획 : 17,214백만원 증가 (75,993백만원 → 93,207백만원)

※ 전입금 : 17,214백만원 증가 (0 → 17,214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과 목		당초금액 (A)	변경금액 (B)	증감액 (C=B-A)	비율(%) (D=C/A)
장	관 - 항 - 목				
합 계		75,993	93,207	17,214	22.7%
200	세외수입	2,700	2,700	-	-
	210 경상적세외수입	2,700	2,700	-	-
	216 이자수입	2,700	2,700	-	-
	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2,700	2,700	-	-
700	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73,293	73,293	-	-
	710 보전수입등	73,293	73,293	-	-
	714 예치금회수	73,293	73,293	-	-
	714-01 예치금회수	73,293	73,293	-	-
	720 내부거래	-	17,214	17,214	100.0%
	721 전입금	-	17,214	17,214	100.0%
	721-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	-	17,214	17,214	100.0%

○ 지출계획 변경

- 지출계획 : 17,214백만원 증가 (75,993백만원 → 93,207백만원)

※ 예치금 : 17,214백만원 증가 (75,993백만원 → 93,207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과 목		당초금액 (A)	변경금액 (B)	증감액 (C=B-A)	비율(%) (D=C/A)
정	책 - 단 위 - 세 부 - 편 성 목				
합 계		75,993	93,207	17,214	22.7%
재무활동(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)		75,993	93,207	17,214	22.7%
	보전지출(하수도사업회전기금)	75,993	93,207	17,214	22.7%
	예치금	75,993	93,207	17,214	22.7%
	602 예치금	75,993	93,207	17,214	22.7%

Ⅲ. 검토의견

-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」의 지출예산서중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 172억 1,400만원을 편성요청됨에 따라 동 기금도 수입계획중 172억 1,400만원을 증액하여 수입계획하고, 이와 연동한 지출계획도 172억 1,400만원을 증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지난 5월 27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, 지출예산중 기금전출금 172억 1,4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,
 - 동 기금의 수입계획의 경우에도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72억 1,400만원을 편성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172억 1,4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
 -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(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)**을 당초 지출계획(759억 9,300만원)보다 22.7%, 172억 1,4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려는 것으로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〈표 3-1〉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 책 사 업 / 단 위 사 업 / 세 부 사 업	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 출 합 계		75,993	93,207	17,214	22.7
	재 무 활 동 (물 순 환 안 전 국 물 재 생 계 획 과)	75,993	93,207	17,214	22.7
	보 전 지 출 (하 수 도 사 업 회 전 기 금)	75,993	93,207	17,214	22.7
	예 치 금	75,993	93,207	17,214	22.7

※ 자료근거 :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지출계획,
②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4. 5.27) 재구성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⁾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,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예산중 기금전출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어 추경예산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·지출 계획도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2) 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(용도)
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.

1.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(자본예산에 속하는 것에 한정한다)
2.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
3. 기금 증식을 위한 용자 및 출자